

김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12. 5일 김제시장
- 나. 회 부 일 자 : '97. 12. 16
- 다. 상 정 일 자 : 제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97. 12. 22)
총무위원회에 상정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세정과장 나세훈)

가. 제 안 이 유

-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의 개정 ('97. 10. 1일 시행)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안 제14조의 2 제1항)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안 제14조의 2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 및 제36조의 3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4. 질의 및 답변

- 질의(의원 정영환)
금년중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 답변(세정과장 나세훈)
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취하하였음

- 질의(의원 최병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횟수는?
- 답변(세정과장 나세훈)
년간 운영 횟수가 정하여 진 것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때에만 운영하는것임

- 질의(의원 최병대)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전에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과세전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지?
- 답변(세정과장 나세훈)
전에는 과세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70조가 개정되어 세무 조사후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있을경우등 과세전에 이의신청 할수 있음

5. 심 사 결 과

- 총 11명위원중 8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